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/WMD대응센터를 일반참모부인 핵/WMD 대응본부로 격상하기 위하여, 핵/WMD대응본부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직제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합참 예하 부서간 업무조정과 실제 편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제 개정이 필요

3. 주요토의 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 중 “정보본부·작전본부·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”를
“정보본부·작전본부·전략기획본부·군사지원본부 및 핵/WMD대응본부”로
한다.

제9조 제2항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심리전,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

제11조 제2항 제5호 “민군작전, 심리전, 정보작전,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”를
“민군작전 및 계엄업무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핵/WMD대응본부) ① 핵/WMD대응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,
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

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·우주 정보지원
2. 핵·WMD대응작전 기획 및 지휘·통제 보좌
3. 합동 사이버·전자기·우주 작전기획 및 지휘·통제 보좌
4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 군사전략 발전 및 대외협력
5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·우주 전력기획 지원
6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 합동전투발전 지원

제12조 제1항 중 “부·처·과를”을 “부·처·과 또는 실·단을”로 한다.

제12조 제2항 “차장을 둘 수 있다”를 “차장·조정관을 두고, 실·단에는 실
장·단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 실에는 부실장을 둘 수 있다”로 한다

제12조 제3항 “부장·처장·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
보한다”를 “부장·처장·차장·단장·실장·조정관은 장성급 장교, 2급 이
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”로 한다

제12조 제4항 “부·처·과”를 “부·처·과 또는 실·단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참모 부서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·작전본부·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.	제3조(참모 부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·군사지원</u> <u>본부 및 핵/WMD대응본부</u> -----.
제9조(작전본부) ① (생략)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 5. ~ 9. (생략)	제9조(작전본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심리전, 정보작전 및 사이버</u> <u>작전</u> 5. ~ 9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군사지원본부) ① (생략)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민군작전, 심리전, 정보작전,</u> <u>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</u> <u><신 설></u>	제11조(군사지원본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민군작전 및 계엄업무</u> 제11조의 2(핵/WMD대응본부) ① 핵/WMD대응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,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2조(하부조직)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·처·과를 두고,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. ② 제1항에 따른 부·처·과에는 부장·처장·과장을 두며, 부에는 필요한 경우 <u>차장을 둘 수 있다.</u> ③ 제2항에 따른 부장·처장·차장은 <u>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으로 보한다.</u> ④ 제1항에 따른 부·처·과의 설 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.	1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· 우주 정보지원 2. 핵·WMD대응작전 기획 및 지휘·통제 보좌 3. 합동 사이버·전자기·우주 작전 기획 및 지휘·통제 보좌 4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 군사전략 발전 및 대외협력 5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· 우주 전력기획 지원 6. 핵·WMD 및 사이버·전자기 합동전투발전 지원 제12조(하부조직) ① -----<u>·과 또는</u> <u>실·단을</u>----- ② ----- ----- ----- <u>차장·조정관을 두고,</u> <u>실·단에는 실장·단장을 두며, 필요한</u> <u>경우 실에는 부실장을 둘 수 있다.</u> ③ ----- ----- ----- <u>단장·실장·조정관은 장성급 장교,</u> <u>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</u> <u>장교로 보한다.</u> ④ -----<u>부·처·과 또는</u> <u>실·단의</u> -----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-6577